

---

---

# 신라의 冊封儀禮와 그 기능

---

---

채 미 하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

머리말

I. 冊封 전후 신라와 당의 사신 왕래와 儀禮

II. 책봉의 이념과 실제

III. 애장왕대 冊封儀禮의 정치적 기능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5474). 본 논문은 '한국 고대 冊封儀禮와 그 성격'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라의 冊封儀禮와 그 기능'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 투고일: 2017. 8. 2.      ● 심사일: 2017. 8. 2.      ● 게재확정일: 2017. 8. 15.

## 요약

본 글은 신라의 책봉의례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대내외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책봉 전후에 행해진 사신의 왕래와 그 의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혜공왕의 예를 통해 신라는 책봉을 전후하여 당에 고애사와 사은사를, 당은 조제 겸 책명사를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효성왕대의 당 사신인 형숙을 통해서 당 황제와 신라 왕이 책봉을 授受하는 과정에서 빈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례가 행해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책봉을 전후한 시기에 행해진 각종 의례는 당시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책봉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이념으로, 당 황제는 신라 왕에게 책문·관고·정절·예물 등을 보내 당이 천자국(황제국)이며 신라는 제후국(번국)임을 明示하였다. 특히 신라 하대에는 예물을 왕 이하에게도 내렸다. 하지만 신라왕은 당의 책봉을 당연하게 여기고, 책봉을 받은 이후 사은사를 보내지 않기도 하였다. 신라 역시 책봉의 주체국으로 문무왕은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였으며, 안승이 문무왕에게 보낸 表는 신라가 당에 보낸 乞罪表와 그 형식이 같았고 애장왕은 탐라의 조공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왕 역시 蕃國을 둠으로써 책봉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한편 애장왕은 왕 6년에 당의 책봉을 받았고 왕 9년에는 아버지인 소성왕의 책봉조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애장왕은 당의 책봉에 앞서 왕비와 왕모를 책봉하고 당의 고애사 겸 책명사를 홀대하였다. 애장왕은 초기부터 대일본외교를 통해 친당 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났고 애장왕 5년 대열을 통해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왕 6년 親政에 앞서 애장왕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애장왕은 왕비와 왕모를 책봉하였고 당의 고애사 겸 책명사를 홀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당은 왕을

## 신라의 冊封儀禮와 그 기능

비롯하여 왕모 등을 책봉하였지만 애장왕은 당을 견제하였는데, 이것은 일본과의 우호관계 지속이라든가 개혁정치에서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주제어 : 책봉, 책봉의례, 고에사, 책명사, 사은사, 책문, 관고, 조공,  
혜공왕, 효성왕, 문무왕, 애장왕

## 머리말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五禮는 왕권의례로, 吉禮·賓禮·軍禮·嘉禮·凶禮가 그것이다. 이 중 가례에는 왕이 왕비·왕모·왕세자·왕세손 등에게 행한 책봉의식을 비롯한 朝賀禮 등의 여러 정치적 의식, 왕과 왕세자·왕세손의 혼례 의식, 왕세자·왕세손 등의 冠禮 의식과 각종 賀禮 및 宴禮 의식 등이 있다.

가례의 내용 중 책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중국 왕조와 주변 국가간의 事大 관계에서 조공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던 것으로 이해해 왔다. 즉 책봉은 조공에 대응하여 중국 황제가 주변 나라의 왕에게 특정한 관작과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여함으로써 그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하여 신속시키는 양식이며, 조공은 주변 나라의 왕이 중국 황제에게 신복하여 來朝하는 것이었다.<sup>1)</sup>

이와 같이 책봉은 조공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와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하지만 신라왕은 당의 책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봉의 주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국간에 책봉이 授受되는 과정에서 신라왕은 책봉을 적절하게 정치에 활용하였다. 이에 책봉의례가 한국 고대 사회에 수용·운용되면서 신왕에게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질서 유지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sup>2)</sup>

---

1) 이와 관련해서 김종완, 1989, 「남북조시대의 책봉에 대한 검토」 『동아연구』 19, 1~2쪽; 김한규, 2000, 「고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구조적 특성」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방향숙, 2005, 「고대 동아시아 책봉조공체제의 원형과 변용」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권덕영, 2006, 앞의 논문; 辻正傳, 2009, 「중국왕조의 외교정책」 『동국사학』 46 등 참고.

2) 채미하, 2011, 「신라의 빈례-당 사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3;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해안, 104~114쪽.

그런데 책봉은 정치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즉 책봉의 授受를 전후하여 양국 간에 사신이 왕래하면서 다양한 의례가 행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봉의 이념을 책봉호를 통해 살펴 보았는데,<sup>3)</sup> 당 황제는 신라왕에게 冊文·예물 등을 보내 책봉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봉의 이념과 실체는 달랐다. 또한 신라왕은 책봉의례를 정치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는데, 애장왕의 책봉 관련 기사는 주로 애장왕의 친정과 연관지어 이해하였다. 하지만 당의 책봉 이전에 애장왕이 행한 왕모와 왕비에 대한 책봉기사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신라가 授受한 책봉이 중국과의 국제 질서 외에도 신라의 대내외적 상황과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책봉 授受를 전후하여 고애사와 책명사, 사은사의 왕래와 그것에 수반된 각종 의례가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당이 신라왕에게 내린 책문·관고·정절·예물 등을 통해 책봉의 이념을 검토하고 책봉의 실체는 신라가 책봉의 주체국이기도 하였으며 당의 책봉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것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애장왕 6년과 애장왕 9년 기사에 주목하면서 애장왕이 책봉의례를 당시의 대내외 정치에 활용하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3) 신라가 당에서 받은 책봉호에 대해서는 金子修一, 2001, 「中國皇帝と周邊諸國の秩序」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53~65쪽; 2001, 「唐大冊封制一斑-周邊諸民族における 王号と國王号」, 위의 책; 김종복, 2006, 「남북국의 책봉호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63~71쪽 등.

## I. 冊封 전후 신라와 당의 사신 왕래와 儀禮

책봉의례는 五禮의 하나인 嘉禮의 내용이다. 唐의 가례는 황제·황태자 중심의 책례·관례·혼례와 황실 구성원과 신하의 만남인 조하례 등이 중심이었다. 이것은 『주례』의 親萬民, 즉 황실에서부터 서인에 이르는 의례가 황실중심의 의례로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와 조선의 가례도 왕과 왕태(세)자의 책례와 관례 및 혼례, 조하례가 중심 내용이었다. 이로 볼 때 고려와 조선의 가례는 당 「개원례」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었으며, 책례 즉 책봉의례가 가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sup>4)</sup> 그렇다면 한국 고대, 특히 신라의 책봉의례는 어떠했을까.

신라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자신의 책봉 뿐만 아니라 선왕에 대한 추증을 요청하는 고애사를 당 황제에게 파견하였다. 그리고 당 황제는 신라의 고애사에게 소식을 들은 후 조제 겸 책명사를 보내어 신라의 선왕을 추증하고 신왕을 책봉하였다. 다음으로 신라왕은 추증과 책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은사를 당 황제에게 보냈다.<sup>5)</sup> 이처럼 신라왕은 당 황제의 책봉을 받기 전에 당에 고애사를 보내고 책봉을 받은 후에는 사은사를 당에 보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혜공왕대의 기사이다. 따라서 혜공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우선 고애사 파견과 관련해 다음 사료 A가 관심을 끈다.

- A.1) ① 7월에 伊滄 金隱居를 보내어 당에 들어가 方物을 바쳤다. 이어서 더하여 冊命을 청하였다. 황제가 紫震殿에 나아가 宴見하였다. (『삼국

4) 채미하, 2014, 「신라의 가례 수용과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18; 2015, 앞의 책, 142~146쪽.

5)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건당사연구-』, 일조각, 158쪽.

사기』 9, 신라본기 9, 해공왕 3)<sup>6)</sup>

② 大曆 2년(767)에 憲英이 죽자 國人이 그 아들 乾運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어서 그 大臣 金隱居를 보내어 表를 받들고 入朝하여 方物을 바치고 더하여 冊命을 청하였다. (『구당서』 199上, 열전 149上, 신라)<sup>7)</sup>

③ (당 代宗) 대력 2년 2월에 신라왕 김현영이 죽자 國人이 그 아들 건운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 臣 金隱居를 보내어 더하여 冊命을 청하였다. 詔를 내려 倉部郎中 兼 御史中丞 歸崇敬으로 부절을 지니고 冊書를 가지고 弔하고 왕을 冊하게 하였는데, 乾運으로 開府儀同三司新羅王으로 삼고 이어서 乾運母를 冊하여 太妃로 삼았다. (『책부원귀』 965, 외신부 10, 봉책 3)<sup>8)</sup>

- 2) 大曆(766~779) 초에 憲英이 죽었다. 아들 乾運이 王位에 올랐으나, 아직 어리므로 金隱居를 보내 入朝하여 冊命을 기다렸다. 詔書를 내려 倉部郎中 歸崇敬을 보내어 弔喪하고, 監察御史 陸斑과 顧愔을 副使로 보내어 王으로 책봉하였으며, 아울러 어머니 金氏를 太妃로 삼았다. 이 무렵 宰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서로 공격하여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는데, 3년만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이 해에 來朝하여 貢物을 바쳤다.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신라)<sup>9)</sup>

위의 사료 A-1)에 의하면 해공왕 3년(767), 대력 2년에 해공왕이 당에 김은거를 보내어 方物을 바치고 冊命을 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에는 7월로 『책부원귀』에는 2월로 나온다.<sup>10)</sup> A-2)에는 신라왕과 王太妃

6) 七月 遣伊濱金隱居 入唐貢方物 仍請加冊命 帝御紫震殿宴見

7) 大曆二年 憲英卒 國人立其子乾運爲王 仍遣其大臣金隱居奉表入朝 貢方物 請加冊命

8) (唐代宗) 大曆二年 二月 以新羅王金憲英卒 國人立其子乾運爲王 遣其臣金隱居 請加冊命 詔以倉部郎中歸崇敬 兼御史中丞 持節齋冊書弔 冊之 以乾運 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仍冊乾運母 爲太妃

9) 大曆初 憲英死 子乾運立 甫卅 遣金隱居入朝待命 詔倉部郎中歸崇敬弔 監察御史陸斑·顧愔爲副冊授之 并母金爲太妃 會其宰相爭權相攻 國大亂 三歲乃定 於是歲朝獻

10) 두 사서의 기록 차이는 잘 알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후고를 기약한다.

책봉 기사에 이어 이 무렵 宰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서로 공격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웠다가 3년만에 비로소 안정되었고, 이 해에 來朝하여 貢物을 바쳤다고 한다. 이처럼 『신당서』에는 혜공왕 초기의 권력 다툼이 안정된 후 김은거를 당에 보내어 책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혜공왕 4년에 신라에 온 당의 조제 겸 책명사 歸崇敬이 당을 나가기에 앞서 獨孤及이 그에게 전해준 「送歸中丞使新羅弔祭冊立序」에 “新羅嗣王以喪訃 且請命於我矣”라고 하여,<sup>11)</sup> 신라왕이 경덕왕의 부고를 알리고 책명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혜공왕은 즉위 이후의 혼란한 상황이 안정된 왕 3년에 이찬 김은거를 당에 보내 책봉을 청했는데, 이 때 경덕왕이 죽은 사실도 알려졌다. 효성왕은 왕 2년(737)에 성덕왕의 죽음과 자신의 즉위를 알렸고<sup>12)</sup> 헌덕왕은 왕 즉위년(809)에 김창남을 보내어 애장왕의 죽음을 전하였으며,<sup>13)</sup> 문성왕은 왕 2년(840)에 신무왕의 죽음을 알렸다고 한다.<sup>14)</sup> 崇福寺

11) 儒家者流 鮮肯冠髻多冠者 蓋抗節剛奮 以排擊爲氣使故也. 今天子以公身衣儒服 力儒行 行之修可移於官 學之精可專對四方 是故公任執法之位 且使操節以濟大海 頒我王度於大荒之外 夫新羅嗣王以喪訃 且請命於我矣 我則歸贈繼好 以策命之 實懷遠示德 禮之大者 夫亦將宏宣王風 誕敷微言 使鷄林塞外 一變可至齊·魯 不然歸公何以不陋九夷之行也 蓋行於忠信者無險易 拘於王程者無遠近 故公受詔之日 則遺其身 視涉海如階陸 謂窮髮猶跬步 豈鯨怒鼉拊 足戒行李 凡以詩賦別 姑美遣使臣之盛云爾 (『全唐文』 387, 獨孤及送歸中丞使新羅弔祭冊立序)

12) 『당회요』 95, 신라; 『책부원귀』 964, 외신부, 봉책(2) 개원 25년 정월.

13) 『구당서』 199, 신라; 『신당서』 220, 신라; 『당회요』 95, 신라; 『책부원귀』 972, 외신부 조공(5) 원화 7년 4월; 『책부원귀』 976, 외신부 褒異(3) 원화 7년 7월에는 헌덕왕 4년으로 나온다. 그런데 헌덕왕 2년(810)에 당 황제는 입당한 金憲章에게 “勅新羅王金重熙書”를 보냈다. 이로 볼 때 당에서는 당시까지 金重熙 즉 애장왕이 살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삼국사절요』 13 애장왕 10년조에 “遣伊金昌南等 告哀于唐 辭以病薨 且請承襲”이라 하여, 애장왕이 김언승 등에게 시해되었음에도 마치 병으로 죽었던 것처럼 당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헌덕왕은 애장왕의 죽음을 당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헌덕왕 원년에 김창남을 당에 보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는 동왕 4년조의 錯簡이라 하겠다.

14) 『구당서』 199, 신라; 『당회요』 95, 신라.

碑銘에는 “이에 신하를 (당나라에) 보내어 (현안왕의) 죽음을 고하고 (경문왕이) 왕위를 이은 것을 아뢰었다. 마침내 咸通 6년(869)에 천자가 攝御史中丞 胡歸厚와 우리나라 사람 前進士 裴匡에게 허리에 魚袋를 차게 하고 머리에 豸冠을 쓰게 하여 부사로 삼아 王使 田獻鈹과 함께 와서”라고 한데서, 경문왕은 현안왕의 죽음을 당에 알리고 책봉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효공왕은 자신의 즉위를 당에 알리면서<sup>15)</sup> 진성왕의 추증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라의 고애사가 당에 들어가 선왕의 추증과 신왕의 책봉을 요청하면 당 황제는 그 다음해에 조제 겸 책명사를 보내어 신라왕을 책봉하였는데, 다음이 주목된다.

- B.1) ① (봄) 唐代宗이 倉部郎中 兼 御史中丞 歸崇敬이 부절을 지니고 冊書를 가지고 가서 왕을 開府儀同三司新羅王으로 冊하고 겸하여 王母 金氏를 太妃로 冊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혜공왕 4년)<sup>16)</sup>
- ② (대력) 3년 황제가 倉部郎中 兼 御史中丞 賜紫金魚袋 歸崇敬을 보내어 부절을 지니고 冊書를 가지고 가서 조문하고 冊하게 하였는데, 乾運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으로 삼고 이어서 乾運母를 太妃로 冊하였다. (『구당서』 199上, 열전 149上, 신라)<sup>17)</sup>
- ③ (대력) 3년 2월에 倉部郎中敬 兼 御史中丞 歸崇에게 명하여 부절을 지니고 冊命하게 하고 또 乾運母를 太妃로 冊하였다. (『唐會要』 95, 신라)<sup>18)</sup>

15) 『동문선』 33, 表箋, 謝嗣位表. 이상은 재미하, 2011,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107쪽.

16) (春) 唐代宗遣倉部郎中歸崇敬兼御史中丞 持節齎冊書 冊王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兼冊王母金氏爲太妃

17) (大曆) 三年 上遣倉部郎中兼御史中丞賜紫金魚袋歸崇敬持節齎冊書往冊之 以乾運爲開府儀同三司新羅王 仍冊乾運母爲太妃

18) (大曆) 三年 二月 命倉部郎中歸崇敬兼御史中丞 持節冊命 又冊乾運母爲太妃

- 2) 대력 3년 歲次 戊申 정월 28일, 황제가 모관 모을을 보내어 節을 지니고 책명하였다. … (『全唐文』 415, 常袞 冊新羅王金乾運文)<sup>19)</sup>
- 3) ① 대력 3년, 歲在戊申 2월 경자일 초하루 10일 기유일, 황제가 모관 모로 하여금 節을 지니고 책명하였다. … (『全唐文』 49, 代宗皇帝 冊新羅王太妃)<sup>20)</sup>
- ② (대력 3년 봄 정월) 갑자일에 新羅國王 金乾運母를 太妃로 冊하였다. (『구당서』 11, 본기 11, 代宗)<sup>21)</sup>

위의 사료 B-1)에 따르면 혜공왕 4년(768), 대력 3년에 당 代宗이 倉部郎中 歸崇敬에게 御史中丞을 겸직시켜 부절을 지니고 冊書를 가지고 와서 왕과 왕의 어머니 김씨를 책봉하였다고 한다.<sup>22)</sup> 여기에서 혜공왕의 책봉호는 B-1) ①에 따르면 개부의동삼사 신라왕이었고 혜공왕 어머니의 책봉호는 후술되는 사료 D-2) ②를 보면 新羅王太妃였다. 그런데 혜공왕과 혜공왕모의 책봉 시일이 각 사료는 달리 전한다. 혜공왕의 경우는 B-2)를 보면 正月朔二十八日이라고 하였으나, B-1)의 『삼국사기』에는 춘, 『당회요』에는 2월로 나온다. 혜공왕모는 B-3) ①에는 二月庚子朔十日己酉로 나오지만, B-3) ②의 『구당서』와 『책부원귀』에는 춘정월 갑자로 나온다.<sup>23)</sup> 신라 중대에 조제 겸 책명사가 온 시기 및 임무와 책봉호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9) 維大曆三年歲次戊申正月朔二十八日 皇帝遣某官某乙持節冊命曰 …

20) 維大曆三年 歲在戊申二月庚子朔十日己酉 皇帝使某官某持節冊命曰 …

21) (大曆 三年 春正月) 甲子 冊新羅國王金乾運母爲太妃; (唐 代宗 大曆) 三年 正月 甲子 冊新羅國王金乾運母爲妃 (『冊府元龜』 976, 外臣部 21, 褒異 3)

22)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혜공왕 4년.

23) 혜공왕이나 왕모에 대한 책봉 시기 역시 각 기록이 다른데, 이 역시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표 1】 『삼국사기』에 보이는 신라 중대의 조제 검  
책명사의 임무 및 책봉호

시기	임무	책봉호
태종무열왕 1(654.5)	冊命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문무왕 원년(661) 겨울 10월 29일	弔慰兼勅祭 (賻)贈	
	冊命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신문왕 즉위년(681)	冊立	開府儀同三司 上柱國 樂浪郡王 新羅王
효소왕 즉위년(692)	冊(命)	新羅王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
성덕왕 즉위년(702)	冊(命)	新羅王 輔國大將軍 行左豹韜尉大將軍 雞林州都督
효성왕 2년(738.2)	冊(命)(왕·왕비)	開府儀同三司 新羅王
효성왕 4년(740.3)	詔(命)(왕비)	
경덕왕 2년(743.3)	冊(命)	開府儀同三司 使持節 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 持節 寧海軍使 新羅王
혜공왕 4년(768. 春)	賚冊文冊(命)(왕·대비)	開府儀同三司

위의 【표 1】에서 신라에 온 책명사는 전왕을 추증하고 신왕을 책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성왕<sup>24)</sup> 이후부터는 왕비와 왕모 역시 책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의 조제 검 책명사가 신왕 등을 책봉하면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라 왕은 당에 사은사를 보냈다. 혜공왕은 왕 4년(768) 9월에,<sup>25)</sup> 진평왕은 47년(625) 11월에, 진덕왕은 원년(647) 7월에, 무열왕은 원년(654) 여름 5월에, 문무왕은 2년(662) 7월에, 성덕왕은 2년(703) 7월에, 원성왕은 2년(786) 4월에, 애장왕은 7년(806) 8월에, 흥덕왕

24) 春二月… 唐遣使 詔冊王妃朴氏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효성왕 2년); 三月 納伊瀆順元女惠明爲妃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효성왕 3년); 春三月 唐遣使冊夫人金氏爲王妃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효성왕 4년)

25) 권덕영, 1997, 앞의 책, 158쪽.

은 3년(225) 2월에 사은사를 보냈다.

이상과 같이 신왕은 책봉을 받은 전후에 당에 고애사와 사은사를 파견하였고 당은 조제 겸 책명사를 보내 신왕을 추증하고 신왕을 책봉하였다. 이 때 양국은 사신을 맞이하는 賓禮를 행하였다. 신라는 진평왕 43년(621) 이래 당에 사신을 보내고 당의 사신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당의 빈례를 수용하였고 그것을 운용하였다.<sup>26)</sup> 다음은 『당개원례』의 빈례 항목이다.

【표 2】『당개원례』 빈례 항목

권	항목
79	蕃國王來朝以束帛迎勞, (皇帝)遣使戒蕃王見日, 蕃王奉見, (皇帝)受蕃國使表及幣
80	皇帝燕蕃國王, 皇帝燕蕃國使

위의 【표 2】를 보면 「개원례」 빈례는 외국 왕[蕃王]이 왔을 경우와 외국 사신[蕃使]이 왔을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蕃國의 왕이 왔을 때 束帛으로 맞이하고 위로하는 의식(蕃國王來朝以束帛迎勞), (황제가) 사자를 파견하여 변왕의 알현일을 알리는 의식(遣使戒蕃王見日), 변왕이 (황제를) 알현하는 의식(蕃王奉見), (황제가) 변국왕에게 주연을 베푸는 의식(皇帝燕蕃國王)이다. 후자는 (황제가) 번사의 표와 폐백을 받는 의식(受蕃國使表及幣), 황제가 번국의 사신에게 주연을 베푸는 의식(皇帝燕蕃國使)이다.

신라왕은 직접 당에 들어간 적이 없고 사신을 보냈다. 蕃王과 蕃使에 대한 당의 빈례는 그 격식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변왕과 번사와 관련된 의식은 유사하였다고 한다.<sup>27)</sup> 당 황제는 신라 사신을 우선 장안성의 객관

26) 채미하, 2011,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81~114쪽.

27)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414~415쪽; 石見清裕, 1998, 「唐の國書授與儀禮について」, 『東洋史研究』 57卷2号, 49~53쪽; 김성규, 2003, 「중국 왕조에서의 빈례의 연혁」, 『중국사연구』 23, 83~86쪽. 「개원례」 빈례의 (皇

[官館]에 안치하였고,<sup>28)</sup> 사자를 객관에 보내 신라 사신을 맞이하고 위문하였는데, 「개원례」 빈례의 蕃國王來朝以東帛迎勞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신라 사신에게 당 황제를 알현할 날짜를 전하는데, 이것은 遣使戒蕃王見日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라 사신이 황제를 알현하여 表와 폐백을 바치면 황제는 외국 사신에게 문답과 위로를 행한다. 이것은 受蕃國使表及幣이다. 끝으로 당 황제는 신라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본국으로 가지고 갈 물건을 내려주는데, 皇帝燕蕃國使가 그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이 당 황제는 신라 사신이 당에 입국하고 장안에 입성하면 사신을 보내 이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이 신라로 돌아갈 때 송별 의식을 행하였다. 그렇다면 신라왕은 신라에 온 조제 겸 책명사를 어떻게 맞이하고 돌려보냈을까. 이와 관련해서 효성왕 2년과 3년 기사가 주목되는데, 효성왕 2년(738) 봄 2월에 조제 겸 책명을 위해 온 형숙은 우선 이 때 선왕을 조문하였으며 4월에 왕을 책봉하면서 왕에게 노자 『도덕경』 등과 조서를 바쳤다.<sup>30)</sup> 그리고 신라에 1년 정도 체류한 형숙은 동왕 3년 정월에 왕의 예물을 받고 당으로 돌아갔다고 한다.<sup>31)</sup>

帝)受蕃國使表及幣의 原注에 其勞及戒見日亦如上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上議는 蕃國王來朝以東帛迎勞와 蕃王奉見이다. 이로 볼 때 사신이 왔더라도 勞禮와 戒見禮는 빈왕과 그것과 같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 권덕영, 1997, 앞의 책, 176쪽.

29) 石見淸裕, 1998, 앞의 책, 415~460쪽에서는 당제를 알현하는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위의 책, 461~500쪽에서는 연회의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石見淸裕, 1998, 앞의 논문도 참조). 권덕영, 1997, 위의 책, 176~186쪽에서는 건당사의 당제 대면 의식을 건당사가 官館에 안치된 후부터 1) 당제가 보낸 사자로부터 영접과 위문을 받는 의식 2) 당조로부터 황제 알현일을 통보받는 의식 3) 황제를 알현하는 의식 4) 당제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의식 5) 송별연 의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상과 관련해서 채미하, 2011,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92~93쪽 및 최희준, 2011, 「신라 중대의 당 사신 영접 절차와 운용」 『한국사연구』 153; 박남수, 2011, 「8세기 동아시아 외교와 영빈체계」 『신라사학보』 21, 2011.

30)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효성왕 2년.

31)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효성왕 3년.

아마도 효성왕은 형숙이 객관에 머무르자 사자를 보내 그를 맞이하여 위문하였고 알현일을 통보하였으며, 왕 2년 4월에 형숙을引進하였다. 형숙은 왕에게 당 황제의 조서와 『도덕경』 등 여러 예물을 동시에 바쳤고, 이 때 효성왕은 형숙 등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효성왕 3년 형숙이 신라를 떠날 때 왕은 형숙에게 예물은 주어 의례를 마무리하였다.<sup>32)</sup>

이로 볼 때 신라왕이 당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역시 당의 빈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에 온 당 사신이 선왕을 弔祭하는 것은 「개원례」 凶禮의 칙사를 보내 조문하는 의례(勅使弔)의 하나인 ‘勅使弔蕃國主喪’에 해당하며 先王을 추증하는 것은 「개원례」 흉례의 책문으로 증직하는 의례(策贈)의 하나인 ‘勅使冊贈蕃國主’와 관련 있다. 「개원례」 嘉禮의 임헌하여 제왕과 대신을 책명하는 의례(臨軒冊命諸王大臣)의 하나인 ‘臨軒冊王公’<sup>33)</sup>은 신라왕에 대한 책봉에 해당하는데, 신라왕은 당에 들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당 황제는 사신을 보내 책봉하였다. 이것은 「개원례」 가례의 사신을 파견하여 관작을 책수하는 의례(遣使冊授官爵)이다.<sup>34)</sup> 당에서 신라의 왕후와 태비를 책명한 것은 「개원례」 가례의 내명부를 책명하는 의례(冊內命婦二品以上)에 해당한다.<sup>35)</sup>

이와 같이 책봉 수수를 전후한 시기에 신라왕의 고애사와 사은사 파견, 당의 조제 겸 책명사의 왕래에는 빈례만이 아니라 흉례와 가례 등 다양한 의례가 행해짐을 알 수 있다. 「개원례」 152개의 의례 가운데 78개는 황제의례로 황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32) 채미하, 2011,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99~104쪽.

33) 그 대상이 된 관직은 三師 ·三公 ·親王 ·開府儀同三司 ·太子三師 ·驃騎大將軍 ·左右丞相 등이다.

34) 채미하, 2006,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151~153쪽; 2015, 앞의 책, 309~310쪽.

35) 채미하, 2011,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105쪽.

었다.<sup>36)</sup> 이 중 빈례는 6개 항목 중 1개, 蕃國王來朝以束帛迎勞를 제외하고는 모두 황제의례이다. 가례에는 황제가 원복<sup>37)</sup>을 입는 의례(皇帝加元服)부터 공주를 시집보내는 의례(公主降嫁)까지 50개 중 29개가 황제의례이다. 이 중 임헌하여 왕후를 책명하는 의례(臨軒冊命皇后)·임헌하여 황태자를 책명하는 의례(臨軒冊命皇太子) 등에는 황제가 직접 나와 책명하고 친왕의 冠禮와 納妃, 공주의 출가 의례는 황제가 御座에 앉아 지켜본다. 흉례에는 흉년에 진무하는 의례(凶年振撫) 등 18개가 있는데 이 중 9개가 황제의례이다.<sup>38)</sup>

신라에 빈례를 포함한 五禮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진덕왕대를 전후한 시기로, 진덕왕대 김춘추는 당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서 받은 『진서』는 오례가 처음으로 편제된 중국 정사이다. 그리고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역시 당의 예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에 수용된 오례는 신문왕 6년(686) 당에서 보낸 「길흉요례」<sup>39)</sup>를 통해 체계화되었다. 「길흉요례」는 길례에서 흉례에 이르는 오례의 요긴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신라 왕권을 수식하고 신라왕에게 최고의 권위를 향유토록 하였다.<sup>40)</sup>

이로 볼 때 신라왕은 오례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의 권위 뿐만 아니라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이 중 외국 사신에 대한 접대의

36) 김호, 2003, 「당 전기 중앙관부와 황제 시봉기구」 『중국사연구』 26, 103~104쪽; 이범직, 1990, 「조선전기의 오례와 가례」 『한국사연구』 71 : 2004, 「조선시대 예학연구」, 국학자료원, 50~51쪽.

37) 원복이란 남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大人의 衣冠을 입는 의식이다. 元은 首, 服은 착용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冠을 쓴다는 의미이다(김택민 주편, 2003, 『역주 당육전(상)』, 신서원, 396쪽).

38) 채미하, 2006,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300~302쪽.

39)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신문왕 6년)

40) 채미하, 2006,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30~37쪽 및 300~307쪽.

식인 빈례는 吉·凶·軍·嘉禮와는 달리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 질서 뿐만 아니라 국내 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가례의 하나인 책봉의 授受 행위 과정에서 신라왕은 당 사신을 引見하는 자리에서 의례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책봉의 임무를 띠고 온 당 사신이나 그 자리에 배석한 신라 관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였다.<sup>41)</sup> 이로 볼 때 신라왕이 책봉을 전후하여 행한 각종 의례는 국내의 정치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II. 책봉의 이념과 실제

책봉은 冊을 주어 봉건한다는 뜻으로, 당 황제는 藩屬·제후·종족·비빈·공신 등에게 봉작을 주면서 일정한 의식을 거행하고 冊文<sup>42)</sup>을 내렸다. 그리고 책문을 宣讀한 후 책문에 印璽를 찍어 봉작을 받는 자에게 주어 책봉하였다. 이 때 당 황제는 官誥, 旌節, 예물 등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관심을 끈다.

41) 채미하, 2011, 앞의 논문; 2015, 위의 책.

42) 唐代的 王[天子]言으로는 制·勅·冊(『唐六典』 1, 尙書都省 左右司郎中員外郎職掌)이 있으며 이것은 세분되어 冊書, 制書·慰勞制書, 發日勅·勅旨·論事勅書·勅牒(『당육전』 9 中書省 中書令職掌조)으로 그 용도를 전하고 있다. 이것이 公的인 왕언이라고 한다면 당대의 문헌에는 璽書·手詔·手制·優詔·優制·墨詔·墨制·詔旨·書詔·墨勅·手勅·口勅·御札·勅旨·勅意·書意·宣·聖旨·恩勅·進止가 보인다. 이것은 관용적 표현의 왕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서는 唐初에는 詔書가 정식 명칭이었는데, 측천무후(載初元年 正月(689년 11월))에 의해 제서로 개칭되었다. 이후 詔와 制는 혼용되었고 제와 칙(발일칙)은 문서 양식과 그 용도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혼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中村裕一, 2003, 「序說 王言の種類と「制勅」字」, 『隋唐王言の研究』, 汲古書院, 3~17쪽 참조.

- C. 여름 4월 1) 당 의중은 太子右諭德 御史中丞 胡歸厚와 副使 光祿主簿 兼 監察御使 裴光 등을 보내 先王을 弔祭하고 아울러 賻儀로 1천 필을 보냈다. 2) 왕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 大都督鷄林州諸軍事 上柱國 新羅王으로 삼아 冊立했으며 因하여 왕에게 官誥 1통[道], 旌節 1벌[副], 채색비단[錦綵] 5백 필, 옷[衣] 2벌, 금은그릇[金銀器] 7개[事]를 내렸다. 3) 왕비에게는 비단 50필과 옷 1벌과 은 그릇 2개를 내렸고, 왕태자에게는 비단 40필과 옷 1벌과 은그릇 1개를 내렸으며, 大宰相에게는 비단 30필과 옷 1벌과 은그릇 1개를 내렸고, 대재상에게는 비단 20필과 옷 1벌과 은그릇 1개를 내렸다. (『삼국사기』 11, 신라본기 11, 경문왕 5년)<sup>43)</sup>

위의 사료를 보면 당 의중은 사신을 보내 C-2)에서 경문왕을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 大都督鷄林州諸軍事 上柱國 新羅王으로 책봉하고 왕에게 官誥 1통, 旌節 1벌, 채색비단 500필, 옷 2벌, 금은그릇 7개를 주었다고 한다. 당 의중은 경문왕을 책봉할 때 책문 역시 보냈을 것인데, 경문왕의 책문은 전하지 않는다. 책문과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 D. 1) ① 대력 3년 歲次 戊申 정월 28일, 황제가 모관 모을을 보내어 符節을 지니고 책명하여 말하였다. ② “오호라. 만국을 세운 것은 中夏 뿐만이 아니며, 一姓을 이은 자는 반드시 아름다운 덕을 구한다. 아, 너 신라왕 金英憲의 아들 乾運은 곧 祖宗으로부터 東表를 撫有하였고 明懿를 克生하였으며, 勳伐이 載茂하고 文物이 采章하며 오랫동안 華風을 몸에 받아 忠敬孝恭이 純性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변방의 군자국(蕃君子之國)으로 外臣의 예를 지킬 수 있었다. 대저 대를 잇

43) 夏四月 1) 唐懿宗降使太子右諭德御史中丞胡歸厚 使副光祿主簿兼監察御史裴光等 弔祭先王 兼賻贈一千匹 2) 冊立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上柱國新羅王 仍賜王官誥一道旌節一副錦綵五百匹衣二副金銀器七事 3) 賜王妃錦綵五十匹衣一副銀器二事 賜王太子錦綵四十匹衣一副銀器一事 賜大宰相錦綵三十匹衣一副銀器一事 賜次宰相錦綵二十四匹衣一副銀器一事

는 막중함은 어진 사람을 골라 주는 것이니, 이로써 너의 冢社를 세움으로써 靑邱에 복을 내리고, 그 지키는 바를 공경하여 그 舊服을 이어 忠으로 上을 받들고 惠로써 아래를 撫하여 영원히 東蕃의 職을 닦아, 先君의 命을 바꿈이 없이 공경히 典禮를 膺하여 삼가지 않을 것인저.” (『全唐文』 415, 常袞 冊新羅王金乾運文)<sup>44)</sup>

- 2) ① 대력 3년, 歲在 戊申 2월 경자일 초하루 10일 기유일, 황제가 모관 모로 하여금 符節을 지니고 책명하여 말하였다. ② “아, 아들이 家를 이어 받아 藩輔의 臣이 되었다. 어머니에게 존호를 더하니, 대개 춘추의 뜻이다. 아, 너 신라왕 김건운의 母는 바탕은 勳閥을 推하고 우아함은 華風이 있다. 그 덕은 尙할만 하고, 그 儀는 본받을 만하다. 圖史에 績적이 있고 式은 禮容이 있어 동방의 軍자국과 나란히 하며, 中壺의 貴人 자리에 處하여 上을 섬기는데 敬으로써 하고 下를 대하는데 인으로써 하니, 우리의 親隣을 화목하게 하고 또한 內助한다. 자식을 가르치는데 올바른 教훈이 있으며, 대를 잇는 新命에 膺였다. 진실로 崇峻徽章할 만하고, 성대한 예가 밝게 빛났다. 이로써 책봉하여 新羅王太妃로 삼으니, 이에 慈範을 닦아 그 嗣君을 撫하고 前人을 永懷하여, 그 道를 고치지 말라. 典冊을 공경하여 이으니, 삼가지 않을 것인저.” (『全唐文』 49, 代宗皇帝 冊新羅王太妃)<sup>45)</sup>

위의 사료 D는 당 대종이 혜공왕과 혜공왕의 어머니에게 내린 책문이

- 
- 44) 維大歷三年歲次戊申正月朔二十八日 皇帝遣某官某乙持節冊命曰 於戲 建萬國者 不獨於中夏 嗣一姓者 必求於令德 咨爾新羅王金英憲男乾運 爰自祖宗 撫有東表 克生明懿 載茂勳伐 采章文物 久浴華風 忠敬孝恭 率由純性 用蕃君子之國 能執外臣之禮 夫繼代之重 擇賢而授 是用建爾冢社 祚於靑邱 敬其所守 纂其舊服 忠以奉上 惠以撫下 永修東蕃之職 無替先君之命 肅膺典禮 可不慎歟
- 45) 維大歷三年 歲在戊申二月庚子朔十日己酉 皇帝使某官某持節冊命曰 於戲 子承家嗣 作藩輔之臣 母加尊號 蓋春秋之義 咨爾新羅王金乾運母 素推勳閥 雅有華風 其德可尙 其儀可則 鑑於圖史 式是禮容 麗東方君子之國 處中壺貴人之位 事上以敬 接下以仁 睦我親隣 亦資內助 有教子之明訓 膺繼代之新命 固可以崇峻徽章 光昭盛禮 是用冊爲新羅王太妃 修乃慈範 撫其嗣君 永懷前人 無改其道 欽承典冊 可不慎歟

다. 책문은 책봉 연월일과 신라에 파견된 당 사신, 본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은 책봉을 받는 대상과 책봉호가 나오며, 이들에게 번국의 예를 다하라고 한 뒤 글을 맺고 있다. 이것은 당 현종이 경덕왕을 책봉한 제서인 경덕왕 2년(743) 기사도 마찬가지이다.<sup>46)</sup>

이와 같은 책문에는 당 황제가 신라왕을 제후국왕으로 책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D-1) ②의 “忠敬孝恭이 純性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번방의 군자국(蕃君子之國)으로 外臣의 예를 지킬 수 있었다. … 영원히 東蕃의 職을 닦아 先君의 命을 바꿈이 없이”라고 하였든가 D-2) ②의 “아들이 家를 이어 받아 藩輔의 臣이 되었다”라고 한데서, 당 황제는 해공왕과 해공왕모를 제후국왕과 제후국왕모로 책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덕왕 2년 경덕왕의 책문에 “賓客의 예절로써 우대하여 책명하노니 마땅히 옛 왕업을 지켜 번국왕[藩長]의 이름을 계승하라.”라고 하였든가, 당 덕종이 원성왕 2년(786)에 내린 조서에 “경은 마땅히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돌보아 길이 번방의 신하[藩臣]가 되어, 바다 모퉁이에 있는 나라를 평온케 하라”<sup>47)</sup>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책문의 내용에서 당은 신라를 제후국으로 명칭하였으며, 신라왕에게 책봉호를 내림으로써 중국과 신라를 君臣관계로 설정해 책봉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사료 C-2)에서 경문왕이 받은 官誥는 새로운 관직·관품·훈작 등을 줄 때 수여하는 告身狀(임명장)<sup>48)</sup> 당의

46) 三月 唐玄宗遣贊善大夫魏曜 來吊祭 仍冊王爲新羅王 襲先王官爵 制曰 故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兼持節寧海軍使·新羅王金承慶弟憲英 棄業懷仁 率心常禮 大賢風教 條理尤明 中夏軌儀 衣冠素襲 馳海琛而遣使 準雲呂而通朝 代爲純臣 累効忠節 頃者 兄承士宇 沒而絕嗣 弟膺繼及 抑惟常經 是用寅懷 優以冊命 宜用舊業 俾承藩長之名 仍加殊禮 載錫漢官之號 可襲兄新羅王·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兼持節寧海軍使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경덕왕 2년)

47)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원성왕 2년.

48) 관고의 사전적 의미는 황제가 賜爵, 그리고 授官하는 詔令을 말하며 여기에는 신라왕의 책봉호와 추증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종이 경문왕에게 준 고신장은 冊授 告身이었다.<sup>49)</sup> 그리고 효공왕 원년(897) 7월 5일에 崔元은 경문왕을 太師로, 현강왕을 太傅로 추증하는 당 황제의 관고를 가지고 신라에 돌아왔다.<sup>50)</sup>

앞의 【표 1】을 보면 문무왕이 당에서 처음 받은 책봉호는 개부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왕 신라왕이었다. 그런데 문무왕 3년(663) 4월 당은 신라에 계림주대독부를 설치하고 왕을 雞林州大都督으로 임명하였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멸망되었지만, 당은 신라 역시 기미주체제를 통해 지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왕 7년 12월 당이 문무왕에게 채수한(左衛)大將軍은 당의 고구려 정벌을 원조하라는 것으로, 장군호는 기미주 관호 못지않게 당의 기미지배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sup>51)</sup>

당은 당 전기에 소위 ‘기미지배체제’의 성립과 함께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세계질서를 추구하였다. 책봉체제가 간접적인 이민족지배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기미체제는 명목적으로는 중국의 주현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sup>52)</sup> 때문에 당은 신라와 국교관계가 단절되었던 신문왕과 효소왕에게도 책봉을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료 C-2)에서 경문왕이 받은 旌節은 당 황제가 경문왕을 승인하기 위하여 보낸 신표인 것발로,<sup>53)</sup> 왕이 죽으면 이것은 반납된다. 문무왕 7년

---

49) 책수고신은 諸王이나 文武職事官 3품 이상 혹은 文武散官 2품 이상과 都督·都護·上州刺史의 在京師에게 주었으며 이외에 制授(5품이상), 勅授(6품 이하), 守5품 이상 및 視5품 이상), 旨授(6품 이하), 判補(視品 및 流外官)고신이 있다(『通典』 15, 選舉3, 大唐). 이상은 中村裕一, 2003, 「第一章 王言之制 第一節 冊書」 『隋唐王言之研究』, 20~32쪽. 그리고 문서형식과 관련해서는 金子修一, 2001, 「唐代之國際文書形式」 『隋唐之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142~145쪽 참조.

50) 『東文選』 33, 表箋, 謝恩表. 『삼국사기』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즉위년조에는 謝追贈表로 나온다.

51) 김종복, 2006, 앞의 논문, 65~66쪽.

52) 당의 기미주지배체제와 관련해서 栗原益男, 1979, 「七・八世紀の東アジア世界」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53) 唐代之 符節은 銅魚符, 傳符, 隨身魚符, 木契, 旌節 등 5가지로, 漢 이래로 정절만을

(667) 12월 왕은 대장군의 정절을 받았고, 성덕왕 33년(734) 金忠信이 당나라 황제에게 올린 表를 보면 동왕 32년에 왕에게 영해군사를 더해주면서 정절을 준 것을 알 수 있으며, 진성왕 7년(893)에는 왕이 김처회를 당에 보내 경문왕이 받은 정절을 바치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책문·관고·정절은 당 황제가 신라왕을 승인하는 상징적인 표식으로, 이를 통해 당 황제와 신라왕은 군신관계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가 사이에 주고 받는 예물은 幣 혹은 幣帛이었다.<sup>54)</sup> 앞의 사료 C-2)에서 당 의종은 경문왕에게 예물을 내렸는데, 경문왕은 채색비단 500필, 옷 2벌, 금은그릇 7개를 받았다. 신라 중대 왕들 역시 책봉을 받을 때 예물을 수령하였다. 대표적으로 성덕왕 32년(733)에 당 현종이 성덕왕에게 개부의동삼사 영해군사의 관작을 더해주고 군사를 내어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라는 당 현종의 칙서를 내리면서 아울러 왕에게 흰 앵무새 암수[白鸚鵡雌雄] 각 1마리씩과 자주색 얇은 비단에 수놓은 두루마기[紫羅繡袍], 금은으로 세공한 그릇[金銀細器物], 상서로운 무늬가 있는 비단[瑞紋錦], 다섯가지 색깔로 물들인 얇은 비단[五色羅縵] 등 300여단을 주었다.<sup>55)</sup>

그런데 당 의종은 사료 C-3)에서 경문왕 뿐만 아니라 왕비, 왕태자,

---

절이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라고 하였다(『당육전』 8, 門下省 符寶郎조). 형태상으로 보면 앞의 4가지는 모두 함 속에 비밀스럽게 넣어가거나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소형물임에 반해 旌節은 대나무 깃대 위에 소의 꼬리를 매달고 장식을 가해 사용한 깃발로서 대외 전시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4가지 符는 모두 하나를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눈 割符 형태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符는 반드시 왼쪽 할부와 오른쪽 할부가 동시에 한 곳에서 만나야만 비로소 계구실을 할 수 있었던 반면 旌節의 경우는 使者에게 수여하는 순간부터 권한 위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임장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김선민, 2003, 「당대의 중앙-지방 통신체계와 동어부」 『중국사연구』 25, 90~92쪽).

54) 幣 帛也(『說文』); 六曰 幣帛之式(幣帛所以贈勞賓客者)(『周禮』 天官 大宰); 蕃主進受幣(綵五匹爲一束)(『唐開元禮』 79, 賓禮 蕃國王來朝以束帛迎勞)

55)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성덕왕 32년.

대제상에게도 예물을 내렸다. 이것은 원성왕 2년 당 덕종이 내린 예물과 비교된다.<sup>56)</sup> 후술되는 사료 H-2) ②를 보면 애장왕 9년(808) 소성왕의 책봉문서를 돌려보내면서 당 덕종은 왕의 숙부 연승과 그 아우 중공 등에게 門戟을 내렸으며, 당 헌종은 헌덕왕 원년(809)에 왕을 책봉하면서 대제상 김승빈 등 세 사람에게 문극을 내리기도 하였다.<sup>57)</sup> 이와 같이 신라 중대와는 달리 하대에는 왕 뿐만 아니라 왕비 등도 당 황제로부터 예물을 받았다. 이것은 후술되는 신라 하대에 신라왕의 책봉호가 명예직으로 되면서, 당은 왕비 등에게도 예물을 내림으로써 이들 역시 중국의 세계질서에 편제하여 책봉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상에서 당 황제의 책봉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이념(이데올로기)으로, 여기에는 중국이 천자국(황제국)이며 주변 제국은 제후국(번국)이라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이 추구한 책봉의 이념과 실제(현실)는 달랐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문무왕 8년(668)에 安勝<sup>58)</sup>은 4000호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였는데,<sup>59)</sup> 문무왕 10년 6월에 劍牟岑이

56)

	왕 : 羅錦綾綵 30필, 옷 1벌, 銀盃 1개
원성왕 2년(786.4)	왕비 : 錦綵綾羅 20필, 금실로 수놓은 비단치마[押金線繡羅裙衣] 1벌, 銀碗 1개
	대제상 1인 : 옷 한 벌, 銀碗 1개
	차제상 2인 : 옷 한 벌, 銀碗 1개
	왕 : 錦綵500필, 옷 2벌, 금은그릇 7개
경문왕 5년(865.4)	왕비 : 錦綵 50필, 옷 1벌, 은그릇 2개
	왕태자 : 錦綵 40필, 옷 1벌, 은그릇 1개
	대제상 : 錦綵 30필, 옷 1벌, 은그릇 1개
	차제상 : 錦綵 20필, 옷 1벌, 은그릇 1개

57)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헌덕왕 원년.

58)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 보장왕의 외손, 연정토의 아들 등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대체로 보장왕의 외손이자 연정토의 아들로 파악하고 있다.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일조각, 335~338쪽, 임기환, 2004, 『고구려유민의 활동과 보덕국』 『고구려정치사연구』, 한나래, 321쪽 등.

59)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7년.

안승을 漢城에서 추대하였고,<sup>60)</sup> 안승은 소형 다식 등을 신라에 보내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잇게 하는 것은 천하의 公義(興滅國 繼絕世 天下之公義也)”라 하여 신라의 공인을 바라고 있으며 신라를 大國으로 칭하며 藩屏을 자처하였다(惟大國是望 我國先王 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 貴族安勝 奉以爲君 願作藩屏 永世盡忠).<sup>61)</sup> 그리고 문무왕은 10년 7월에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고 예물을 내렸다.

- E. 가을 7월 沙滄 須彌山을 보내 안승을 封하여 고구려왕으로 삼았다(封安勝爲高句麗王). 그 책문[冊]은 다음과 같다. “삼가 사신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 策命을 펼치고 공을 고구려왕으로 삼을지니(謹遣使一吉滄金須彌山等 就披策命公爲高句麗王), 공은 마땅히 유민들을 어루만져 모으고 옛 왕업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지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粳米 2000섬과 갑옷 甲具馬 한 필, 綾 5필과 絹細布 각 10필, 綿 15稱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 (『삼국사기』 6, 신라본기6, 문무왕 10년)<sup>62)</sup>

위의 사료 E는 당 황제가 신라 왕을 책봉할 때 보낸 책문과 비교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여러 용어, 冊·策·封王 등은 황제가 제후국왕을 책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책문의 마지막에 ‘王其領之’하라는 문구도 황제가 책봉의 詔와 물품을 보내면서 사용하던 용어이다.<sup>63)</sup> 또한 본문의

60) 『삼국사기』 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당 고종 함녕 원년 4월조에는 같은 해 4월 唐軍의 공격으로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투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61)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

62) 秋七月 遣沙滄須彌山 封安勝爲高句麗王 其冊曰 … 謹遣使一吉滄金順彌山等 就披策 命公爲高句麗王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 兼送粳米二千石 甲具馬一匹綾五匹絹細布各十匹綿十五稱 王其領之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

63) 양정석, 1999, 「신라 공식령의 왕명문서양식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5, 175~177쪽.

내용에서 문무왕은 안승을 책봉하면서 “영원히 이웃 나라가 되어 형제와 같이 지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 후 당과의 갈등·긴장 관계 속에서 신라의 독자적인 세계질서를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sup>64)</sup> 이것은 다음 해인 문무왕 11년 당 총관 설인귀의 편지에서 신라가 고구려 안승을 外援으로 삼은 것을 탓하기도 한 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65)</sup> 그리고 문무왕은 왕 14년에 안승을 다시 보덕국왕으로 책봉하였다. 동왕 20년(680) 3월에는 보덕국왕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 또는 잡찬 김의관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면서 교서를 내렸는데,<sup>66)</sup> 5월에 보덕국왕 안승은 문무왕의 교서에 감사하면서 표를 올렸다.<sup>67)</sup>

특히 안승이 문무왕에게 올린 表는 頭辭(말하는 주체 등)와 본문 내용(핵심내용), 尾辭(사절단의 대표와 종결 인사말 등)로 나누어져 있다.<sup>68)</sup> 이것은 문무왕이 왕 12년(672) 9월에 당 고종에게 보낸 ‘乞罪表’와 비교된다. 걸죄표의 두사는 ‘臣某死罪謹言’, 미사는 ‘謹遣原川等 拜表謝罪 伏聽

- 
- 64) 양정석, 1999, 위의 논문, 175쪽; 서의식, 1996, 「통일신라기의 開府와 진골의 受封」 『역사교육』 59.
- 65) … 又高麗安勝 年尙幼沖 遣壑殘郛 生人減半 自懷去就之疑 匪堪襟帶之重 仁貴樓船 竟翼風帆 連旗巡於北岸 矜其舊日傷弓之羽 未忍加兵 恃爲外援 斯何謬也 …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11년 7월 26일). 이상과 관련해서 박초롱, 2017, 「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 조치와 그 의미: 중국 二王後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사연구』 86도 참고.
- 66) 三月 以金銀器及雜綵百段 賜報德王安勝 遂以王妹妻之(一云 迺浪金義官之女也) 下教書曰 …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20년)
- 67) 夏五月 高句麗王使大將軍延武等上表曰 臣安勝言 大阿浪金官長至 奉宣教旨 并賜教書 以外生公 爲下邑內主 仍以四月十五日至此 喜懼交懷 罔知攸宜 竊以帝女降媿 王姬適齊 本揚聖德 匪闕凡才 臣本庸流 行能無算 幸逢昌運 沐浴聖化 每荷殊澤 欲報無堪 重蒙天寵 降此姻親 遂卽穠華表慶 肅籬成德 吉月令辰 言歸弊館 億載難遇 一朝獲申 事非望始 喜出意表 豈惟一二父兄 實受其賜 其自先祖已下 寔寵喜之 臣未蒙教旨 不敢直朝 無任悅豫之至 謹遣臣大將軍太兄延武 奉表以聞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20년)
- 68) 황위주, 2007, 「발해 외교문서의 실상과 그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26, 217~219쪽.

勅旨 某頓首頓首 死罪死罪'이며 안승이 문무왕에게 보낸 表의 두사는 '臣安勝言', 미사는 '謹遣臣大將軍太兄延武 奉表以聞'이다.

이와 같이 신라왕은 당의 세계질서에서 보면 제후왕이었지만, 문무왕 역시 책봉의 주체자로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하였다.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 F.1) ① 여름 4월 耽羅國이 方物을 바쳤다. 왕이 기뻐하여 使者를 恩率로 삼았다.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문무왕 2년)<sup>69)</sup>
- ② 8월 왕은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아니하자 친히 정벌하려고 武珍州에 이르러다. 耽羅가 그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죄를 빌자 그만두었다(耽羅는 곧 耽牟羅이다).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동성왕 20년)<sup>70)</sup>
- 2) 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이 항복해 왔다. 탐라는 武德 이래로 백제에 臣屬되어 있었기 때문에 佐平으로 관호를 삼았다. 이 때 이르러 항복하여 屬國이 되었다.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sup>71)</sup>
- 3) 2월 사신을 보내 탐라국을 經략[略]하였다.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9년)<sup>72)</sup>
- 4) 겨울 10월 탐라국이 사신을 보내 와 朝貢하였다.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2년)<sup>73)</sup>

사료 F-1)을 보면 탐라는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백제에 신속되어 있었는데,<sup>74)</sup> 당시 신라는 탐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sup>75)</sup>

69)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70)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卽耽牟羅)

71)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72) 二月 發使略耽羅國

73) 冬十月 耽羅國遣使朝貢

74) 이근우, 2006, 「탐라국 역사 소고」, 『부대사학』 30, 448~456쪽 참고.

75) 『삼국유사』 마한; 『삼국유사』 皇龍寺九層塔.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당하자 F-2)에 따르면 문무왕 2년(662)에 탐라는 스스로 신라의 屬國이 되고자 하였다. 즉 탐라는 백제가 멸망하자 신라에 복속되었던 것이다.<sup>76)</sup> F-3)을 보면 문무왕 19년에 신라가 탐라국을略했다고 한다. 略에 대해 신라가 탐라를 침공하였다는 것<sup>77)</sup>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탐라의 조공을 독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78)</sup>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면 신라는 탐라에 대해 자치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써 F-4)를 보면 탐라는 애장왕 2년(801)에 신라에 조공하였다.<sup>79)</sup>

이와 같이 신라는 책봉의 주체국이기도 하였으며 당의 책봉에도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의 책봉은 신라 왕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책봉국인 신라에서는 당의 책봉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당과의 국교단절 속에서도 신문왕과 효소왕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신라왕은 당의 책봉에 무조건 응하지만은 않았다. 책봉을 받은 이후 사은사를 보내지 않은데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문무왕은 당의 세계질서에 반발하였고 나·당전쟁으로 국교는 단절되었다. 이 시기 당 황제는 사신을 보내 신문왕·효소왕을 책봉하였지만, 신문왕·효소왕은 당에 사은사를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신문왕 12년(692)에는 당에서 태종무열왕의 묘호를 고치라는 사신도 보냈지만, 이 또한 거부하였다. 후술되듯이 애장왕은 고에 겸 책명사를

76) 이와 관련해서 『고려사』 57, 지 12, 지리 3 耽羅縣도 참고.

77) 森公章, 1981,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35쪽.

78) 진영일, 2007,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24~225쪽. 한편 이근우는 2006, 앞의 논문, 463쪽에서 679년에 경략하였다는 것은 당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은 신라가 주변 국가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적으로 정벌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79) 이근우, 2006, 앞의 논문, 463쪽에서 탐라는 종래 백제와의 관계처럼 신라의 부용국이나 신속국이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이후에도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았고 신라의 영역으로 편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홀대하기도 하였고 당의 책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은사를 보내지 않았으며 당의 책봉에 앞서 왕비와 왕모를 책봉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책봉은 중국이 주변국을 신복시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양식으로, 중국을 종주국으로 주변제국을 종속국으로 하는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주변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크게 괴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신라는 피책봉국이었지만, 책봉의 주체국이기도 하였고 중국의 책봉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렇다면 신라왕은 책봉의례를 대내외 정치에 어떻게 활용하였을까.

### III. 애장왕대 冊封儀禮의 정치적 기능

신라왕은 책봉의례를 대내외 정치에 활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선 애장왕 6년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G. 1) 봄 정월에 어머니 김씨를 大王后로 封하고 妃 박씨를 王后로 삼았다. 2) 이 해에 당나라 덕종이 죽었다. 순종이 병부낭중 겸 어사중승 원계방을 보내 죽음을 알렸다. 3) 또 왕을 개부의동삼사 겸교태위 사지절 대도독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겸 지절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그 어머니 숙씨를 大妃로 삼았고 妻 박씨를 妃로 삼았다. (『삼국사기』 10, 신라본기10, 애장왕 6년)<sup>80)</sup>

위의 사료 G-1)을 보면 애장왕은 왕 6년 봄 정월에 어머니와 비를 대왕

80) 1) 春正月 封母金氏爲大王后 妃朴氏爲王后 2) 是年 唐德宗崩順宗遣兵部郎中兼御史大夫元季方 告哀 3) 且冊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大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雞林州刺史兼持節充寧海軍使上桂國新羅王 其母叔氏爲大妃 妻朴氏爲妃

후와 왕후로 책봉하였는데, G-3)을 보면 당 황제는 애장왕을 책봉하면서 왕의 어머니 숙씨는 대비, 아내 박씨는 왕비로 책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애장왕은 13세로 즉위하면서 병부령이었던 김언승의 섭정을 받았다.<sup>81)</sup> 이후 18세가 되는 해인 왕 6년(805)에 친정을 시작하였으며,<sup>82)</sup> 사료 G-3)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의 책봉을 받았다. 대체로 신왕이 즉위한 뒤 3년이 지나 중국으로부터 책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라 왕권의 불안정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애장왕의 즉위에 앞서 원성왕대 잇따른 태자 사망, 소성왕대 정치적 불안과 소성왕의 부死, 뒤이은 어린 태자의 왕위 즉위는 왕실을 불안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애장왕은 친정 후 책봉을 받았고 이후 다양한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동왕 6년 8월 公式 20여 조의 반포, 동왕 7년 3월의 佛寺新創의 금지와 사치금지 조치 및 동왕 9년의 제군현 강역의 分定 등을 들 수 있다.<sup>83)</sup> 그리고 『삼국사기』 잡지 직관(상)에는 애장왕 6년에 位和府의 장관과 차관의 직명을 衿荷臣·上堂에서 슈·卿으로 바꾸었다 하고, 여러 사찰 관련 관부의 장관·차관 역시 애장왕대에 영과 경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sup>84)</sup>

이와 같이 애장왕이 친정 이후 행한 개혁은 G-3)의 당의 책봉과 관련

---

81) 哀莊王立 諱清明 昭聖王太子也 … 卽位時年十三歲 阿滄兵部令彥昇攝政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즉위년)

82) 애장왕 6년 1월에 와서 비로소 왕모 김씨를 王大后, 왕비 박씨를 왕후로 봉하였던 것을 이때에 김언승의 섭정이 끝나고 애장왕이 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최병현, 1981,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444쪽)가 있어 참고된다.

83) 秋八月 頒示公式二十餘條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6년); 春三月 … 下敎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삼국사기』 10, 신라본기10, 애장왕 7년); 春二月… 發使十二道 分定諸郡邑疆境 (『삼국사기』 10, 신라본기10, 애장왕 9년)

84) 채미하, 2001, 「신라하대의 오묘제」, 『종교연구』 25; 2008, 앞의 책, 208~212쪽. 그리고 최홍조, 2004,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彥昇」, 『한국고대사연구』 34; 최홍조, 2009,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4 등도 참고.

있는 것으로,<sup>85)</sup> 애장왕은 다양한 개혁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다고 한다.<sup>86)</sup> 즉 당의 책봉은 친정 이후의 애장왕의 권력집중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신라왕에게 당 황제의 책봉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의 인정이며 또한 왕권의 현상 유지를 꾀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도 주목된다.

H.1) 앞서 원성왕이 죽자 당 덕종이 司封郎中 겸 御史中丞 韋丹을 持節使로 보내어 조문케 하고, 또 왕 俊邕를 책봉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新羅王으로 삼았는데 위단이 鄆州에 이르러 소성왕의 죽음을 듣고는 돌아갔다.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1년)

85) 최병현, 1981, 앞의 논문, 444쪽.

86) 이기동, 1984, 앞의 책, 153~154쪽. 그런데 애장왕 6년 이후의 개혁을 김연승과 그의 동생인 秀宗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하기도 한다(김동수, 1982, 「신라 헌덕·홍덕왕대의 개혁정치—특히 홍덕왕 9년에 반포된 계구정의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39, 29~31쪽). 따라서 헌덕왕이 조카인 애장왕을 살해하고 즉위한 것은 김연승과 김수종의 專權에 대한 애장왕측의 어떤 반발이 있었던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동수, 1982, 위의 논문, 34~35쪽). 그리고 김창겸은 김연승 등이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세력을 강고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애장왕의 친정문제가 대두되자, 취약한 애장왕 왕권에 대한 타가계로부터 위협을 예상하고 이를 계기로 양측의 갈등이 생겨 결국 원성왕계 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애장왕의 피살을 불려온 것이라고 하였다(1993, 「신라하대왕위계승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6쪽 주 106 : 2003,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또한 이명식은 애장왕이 시해되던 때에 王弟인 體明이 왕을 시위하다가 함께 해를 당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당시 애장왕이 친정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王弟 體明과 더불어 모의하고 김연승 세력을 타도할 목적으로 먼저 군대를 동원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1992, 「신라 원성왕계의 분지화와 왕권붕괴」, 『중세장흥식박사화갑기념논총』, 86~87쪽). 한편 애장왕의 시해 원인을 애장왕이 김연승 세력의 견제를 위하여 김주원계의 김현창을 시중으로 삼았다가 시해당하였다는 애장왕측의 반발을 듣기도 하나(신형식, 1974, 「신라 병부령고」, 『역사학보』 61, 92쪽), 김현창이 아니라 김현정임이 밝혀졌고(이기백, 1974, 「신라 하대의 집사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77쪽), 이는 상대등 세력의 왕위 부자상속체에 대한 반항의 일면이라고 보기도 한다(이기백, 1962, 「상대등고」, 『역사학보』 19, 1962 : 1974, 앞의 책, 122쪽).

2) (봄 2월) 金力奇를 보내 조공하였다. 김역기가 上言하기를 “① 貞元 16년(800)에 조서를 내려 신의 옛 임금인 金俊邕를 신라왕으로, 어머니 신씨를 대비로, 부인 숙씨를 왕비로 책봉하셨으나, 冊使인 韋丹이 도중에서 왕의 죽음을 듣고 돌아가 그 冊은 中書省에 있습니다. 앞드려 청하옵건대, 지금 신이 귀국하는 길에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칙명을 내려 “김준옹 등의 冊은 鴻臚寺가 중서성에서 수령하고, 김역기가 흥려시에서 받아 받들어 귀국하게 하라. ② 또 왕의 숙부 彦昇과 그 아우 仲恭 등에게 門戟을 하사하니, 本國의 예에 준하여 그것을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sup>87)</sup>(『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9년)

위의 사료 H-1)을 보면 소성왕이 원성왕의 죽음을 고하고 책봉을 요청하는 견당사를 보내자, 당 덕종이 조제 겸 책명사로 위단을 파견하였는데, 그는 신라로 오던 중에 소성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사료 H-2) ①을 보면 애장왕 9년(809) 당에 간 金力奇는 소성왕 2년(800)에 소성왕의 죽음으로 미처 수령하지 못한 소성왕과 왕모, 왕비의 책봉과 관련된 문서를 받아가기를 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1】을 보면 신라 중대 효성왕 이후부터 혜공왕까지 당에서 신라의 왕후와 대비를 책명하였는데, 애장왕은 G-3)의 당 황제의 책봉을 받기 전에, G-1)을 보면 애장왕은 어머니를 대왕후로 封하고 妃 박씨를 王后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 하대의 첫왕인 선덕왕은 즉위년(780)에 어머니 김씨를 정의태후로 추존하고 처를 왕비로 삼았으며,<sup>88)</sup> 원성왕 역시 원년 2월(785)에 어머니 박씨를 소문태후로 삼았다.<sup>89)</sup> 이 때 선덕왕

87) (春二月) 遣金力奇入唐朝貢 力奇上言 1) 貞元十六年 詔冊臣故主金俊邕爲新羅王 母申氏爲大妃 妻叔氏爲王妃 冊使韋丹至中路 聞王薨却廻 其冊在中書省 今臣還國 伏請授臣以歸 勅金俊邕等冊 宜令鴻臚寺 於中書省受領 至寺宣授與金力奇 令奉歸國

2) 仍賜王叔彦昇及其弟仲恭等門戟 令本國准例給之

88)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선덕왕 즉위년.

89) 『삼국사기』 10, 신라본기10, 원성왕 즉위년.

은 아버지인 개성대왕을 추봉하였고 원성왕은 직계 4조를 추봉하였다. 이것은 당시 오묘 개편과 관련 있는 것이었다.<sup>90)</sup> 그리고 소성왕은 원년(799)에 죽은 아버지 혜충태자를 혜충대왕으로 추봉하고 왕 2년(800) 봄 정월에 왕비 김씨를 왕후로 봉하였다.<sup>91)</sup> 애장왕은 왕 2년(801)에 혜공왕대 개정된 오묘를 다시 고쳤는데,<sup>92)</sup> 이 때 애장왕은 왕비와 왕모를 책봉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섭정을 한 김언승이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sup>93)</sup> 따라서 애장왕은 왕 6년 친정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왕비를 책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은 안사의 난(755~763) 이후 대내적으로 기존의 지배 체제가 와해되면서 지방의 절도사들이 세력화하는 소위 ‘藩鎮體制’가 성립되었다.<sup>94)</sup> 이에 신라 하대 첫 왕인 선덕왕부터 책봉호에 검교태위가 추가되었는데, 검교직 또는 검교관은 권위나 명예를 표시하는 기능만 가진 관직이었다.<sup>95)</sup> 그리고 선덕왕과 원성왕, 소성왕과 애장왕은 왕모와 왕비에 대한 책봉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G-2)를 보면 당 덕종이 애장왕 6년(805)에 죽자 元季方이 고애사 겸 책명사로 신라에 왔고 G-3)을 보면 당 역시 애장왕의 어머니와 비를 대비와 왕비로 책봉하였다.

당에서 고애사가 오면 신라왕은 前 황제에 대한 조제사 겸 新 황제에 대한 경하사를 보냈다. 진평왕 49년(627) 6월에 당에 간 사신, 진덕왕 4년(650) 6월에 입당한 김법민, 경덕왕 21년(762), 애장왕 7년(806) 8월, 진성왕 5년(891) 여름에 당에 간 사신들은 각각 당 太宗과 高宗, 代宗, 憲宗,

90)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1, 앞의 논문; 2007,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195~202쪽.

91)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소성왕 원년과 2년.

92)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2년.

93) 채미하, 2001, 앞의 논문; 2007, 앞의 책, 208쪽.

94) 정재훈, 2007, 「당 덕종 시기(779~805)의 대외정책과 서북민족의 대응」 『중국고중세사연구』 18, 47~48쪽.

95) 김종복, 2006, 앞의 논문, 71쪽.

昭宗의 즉위를 축하하고 전 황제를 조문하기 위한 조제 겸 경하사였다.<sup>96)</sup> 그런데 애장왕은 元季方으로부터 당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곧바로 사신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신에 대한 접대도 형편이 없어 원계방이 단식하며 시위하자 신라에서 뉘우치고 환대함으로써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고 한다.<sup>97)</sup> 이처럼 애장왕은 고에 뿐만 아니라 책봉의 임무를 띠고 온 사신을 홀대하였다.<sup>98)</sup>

애장왕은 초기부터 당 일변도의 외교 관계를 벗어나 다양한 외교 루트를 마련하였는데, 앞의 사료 F-4)에서 애장왕은 왕 2년에 탐라의 조공을 받았으며 이후 대일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sup>99)</sup>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효소왕 7년(698) 3월에 일본국 사신이 오자 왕이 승례전에서 인견한<sup>100)</sup> 이후, 경덕왕 원년(742) 일본국 사신이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 동왕 12년 가을 8월에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는데 오만하고 예의가 없었으므로 왕이 그들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sup>101)</sup> 이처럼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원활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과의 관계 속에서 대일본외교보다는 대당외교에 주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본과 신라의 외교는 790년(원성왕 6) 이후 단절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애장왕 3년(802) 왕이 김균정에게 대아찬을 수여하고 假王子로 삼아 일본에 볼모로 보내려고 하였지만, 균정이 사양하여 보내지 못하

96) 권덕영, 1997, 앞의 책, 167~169쪽.

97) 新羅聞中國喪 不時遣 供饋乏 季方正色責之 閉門絕食待死 夷人悔謝 結歡乃還(『신당서』 201, 열전 元萬頃傳)

98) 이와 관련하여 다음도 참고된다. (封軌가) 太和(477~499) 중에 … 高麗에 사신으로 갔는데, 고(구)려왕 雲이 그 지리의 치우침을 믿고 병을 칭하며 친히 조서를 받지 않았다. 封軌가 正色하며 왕을 힐책하여 大義로써 깨우치니, 雲이 이에 北面하고 조서를 받았다(太和中 … 銜命高麗 高麗王雲恃其偏遠 稱疾不親受詔 軌正色詰之 喻以大義 雲乃北面受詔(『魏書』 32, 列傳12, 封軌))고 한다.

99) 이와 관련하여 박남수, 2007, 「통일신라의 대일교역과 애장왕대 ‘交聘結好」, 『사학연구』 88 참고.

100)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효소왕 7년.

101) 『삼국사기』 9, 신라본기 9, 경덕왕 원년과 12년.

였고<sup>102)</sup> 이듬해인 왕 4년(803)에는 신라와 일본은 서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었다.<sup>103)</sup> 왕 5년(804)에는 일본 사신이 와서 황금 300량을 바치기도 하였으며<sup>104)</sup> 『일본후기』에는 그 해 9월에 일본이 당으로 가다 실종된 건당사의 신라 표착 여부를 신라에 사신을 보내 묻기도 하였다.<sup>105)</sup>

이와 같이 애장왕은 초기부터 탐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대일본외교를 통해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리고 애장왕 5년(804) 7월에 알천가에서 대열하였다는 것도 관심을 끈다.<sup>106)</sup> 『예기』에는 孟冬에 대열을 한다고 하였고<sup>107)</sup> 『주례』에는 四時로 習武한다고 하였다.<sup>108)</sup> 그러나 四時에 습무하기는 곤란했다. 이에 『국어』를 보면 겨울에 대열하는 것이 관례였다.<sup>109)</sup> 대열은 「개원례」 군례의 皇帝講武에 해당하며, 이것은 仲冬에 都外에서 거행된다고 하였다.<sup>110)</sup> 수대에는 군인들에게 매년 가을에 무기를 살펴계 하고 겨울에는 전법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며<sup>111)</sup> 대업 7년(611)에 수 양제가 강무를 했다.<sup>112)</sup> 당 황제의 열무 중 최대의 규모는 先天 2년(713) 현종이 廬山에서 강무한 것이다.<sup>113)</sup> 『구당서』 배요경전에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

102)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3년.

103)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4년.

104) 秋七月 大闕於始林之原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5년)

105) 『일본후기』 12, 桓武天皇 延曆 23년 9월 己丑(18)

106) 秋七月 大闕於關川之上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5년)

107) 孟冬之月 … 天子乃命將帥講武 習射御角力 (『禮記』 月令)

108) 仲春教振旅 … 中夏教芟舍 … 中秋教治兵 … 仲冬教大闕 (『周禮』 夏官 大司馬)

109) 三時務農而一時講武 故征則有威 守則有財 (『國語』 周語)

110) 『당개원례』 85, 군례 황제강무. 그리고 겨울에 강무를 해야 하는 이유는 武太后 聖曆 2年 王方慶의 상소에서 알 수 있다(『통전』 76, 예 36, 연혁 36, 군례 1, 天子諸侯四時四獵).

111) 軍人每年 孟秋閱戎具 仲冬教戰法(『수서』 예의지 3)

112) 『수서』 본기 및 『통전』 76, 예 36, 연혁 36, 군례 1, 出師儀制(揚兵講武附) 참고.

113) 『통전』 76, 예36, 연혁36, 군례1, 出師儀制(揚兵講武附). 『책부원귀』 124도 참고. 이의 顯慶 2년 11월 21일, 武太后 聖曆 2년(『통전』 76, 예 36, 연혁 3, 군례 1, 出師儀制(揚兵講武附))에도 보인다.

데,<sup>114)</sup> 이것은 강무를 말하는 것이었다.<sup>115)</sup>

이와 같이 강무는 무술을 연습하거나 강습하는 것으로,<sup>116)</sup> 대체로 농한기에 이루어졌는데,<sup>117)</sup> 『춘추』에 보이는 대열은<sup>118)</sup> 비상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애장왕 외에도 문무왕 14년(674) 8월, 선덕왕 3년(782) 7월, 흥덕왕 9년(834) 9월에 대열을 행하였다. 이 시기는 주로 7~9월로, 일상적인 대열이 아닌 비상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119)</sup>

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가의 大事는 제사와 軍事에 있다”<sup>120)</sup>고 하였다. 제사는 근본에 보답하고 神明을 섬기는 것이고 군사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가를 편안히 하기 위한 일이다. 때문에 제사와 군사는 국가 중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국가의 다양한 조직과 제도 중 군사는 국가의 총체적인 생존 역량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였고, 그것과 관련된 의례를 통해 최고 통치권자인 국왕은 자신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기도 하였다.<sup>121)</sup>

이와 같이 애장왕은 초기부터 탐라를 번국으로 여겼으며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통해 당 이외에도 다른 외교 루트를 마련하였고 왕 5년에는 군사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친정을 하면서 어머니와 왕비를 책봉하였다. 그런데 당에서 책명사를 보내 왕모와

114) 兵未訓練 不知禮法(『구당서』 裴耀卿)

115) 胡戟 撰, 1998, 『中華文化通志-禮儀志』, 上海人民出版社, 402~403쪽 및 陳戍國, 1988, 『中國禮制史-隋唐五代卷』, 湖南教育出版社, 208~209쪽.

116) 『春秋』 桓公 6年 秋八月 壬午에 大閱하였다고 한다. 여기의 대열을 『左傳』·『公羊傳』·『穀梁傳』에서는 “簡車馬”·“簡車徒”·“閱兵車”로 해석하고 있는데, 즉 거마와 군대를 검열하고 習武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7) 胡戟 撰, 1998, 앞의 책, 400쪽.

118) 秋八月 壬午 大閱(『春秋』 桓公 6年)

119) 신라에서 대열을 비상시에 행한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120) 國之大事 在祀與戎(『左傳』 成公 13年). 이상은 채미하, 2010, 「신라의 군례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2015, 앞의 책, 130쪽.

121) 채미하, 2010,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115~142쪽.

왕비를 책봉하려고 하자 선덕왕 이래의 왕비와 왕모의 책명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발로 당의 책명사를 홀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왕 뿐만 아니라 왕모와 왕비 역시 당의 책봉을 받은 애장왕은 왕 7년 가을 8월에 책봉에 대한 사은사를 보냈고<sup>122)</sup> 앞의 사료 H-2)를 보면 왕 9년에 소성왕의 책봉 문서를 요청하였고 그와 관련된 책문을 받아 왔다.

이로 볼 때 애장왕은 당과의 관계에서 다시 책봉질서로 편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장왕은 당의 책봉을 받은 이후에도 왕 7년(806)에 일본 사신을 조원전으로 불러 접견하였으며<sup>123)</sup> 왕 9년에는 일본 사신이 오자 왕이 두터운 예로서 그들을 접대하였다고 한다.<sup>124)</sup> 조원전은 선덕왕 5년(651) 정월 초하루에 百官이 왕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는 賀正禮가 열렸던 곳이며<sup>125)</sup> 경덕왕 19년(760) 4월에는 두 해가 나타나 10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자 朝元殿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인연이 있는 중을 기다렸다고 한다.<sup>126)</sup> 이처럼 조원전은 백관의 하정례를 받는 장소이며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의식을 행한 곳으로, 신라 왕궁의 정전이었다.<sup>127)</sup>

신라 왕은 일본 사신을 빈례로서 영접하였을 것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 사신 영접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 사신을 신라의 정전인 조원전에서 맞이했다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애장왕 7년과 9년에 이루어진 당 사신 파견은 일본 사신을 맞이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애장왕이 당 황제의 책봉을 받았지만, 일본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친정 이후의 개혁정치를 통해 당 중

122) 秋八月 遣使入唐朝貢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7년)

123) 春三月 日本國使至 引見朝元殿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7년); 八月 日本國使至 王引見於朝元殿 (『삼국사기』 11, 신라본기 11, 헌강왕 4년)

124) 春二月 日本國使至 王厚禮待之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애장왕 9년)

125)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始於此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선덕왕 5년)

126)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句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緣僧 (『삼국유사』 5, 감통 7, 월명사도술가)

127) 채미하, 2013, 『한국 고대의 궁중의례』 『사학연구』 112; 2015, 앞의 책, 279~280쪽.

심의 세계 질서에 반발하면서 당을 견제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것은 신라 중대 당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효소왕이 일본국 사신을 승례전에서 인견하고 있는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애장왕은 친정 이전부터 대일본 관계라든가 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였고 왕모와 왕비를 책봉함으로써 친정을 과시하였으며 왕모와 왕비에 대한 책봉권을 지키기 위해 당의 책명사를 확대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그리고 애장왕은 당의 책봉을 받은 이후에도 일본과의 관계와 개혁정치를 통해 당을 견제하였다. 하지만 애장왕을 뒤이어 왕위에 오른 헌덕왕의 비와 흥덕왕의 왕모와 비는 당의 책봉을 받았다.<sup>128)</sup> 이와 같은 왕모와 왕비에 대한 당의 책봉은 효공왕 이전<sup>129)</sup>까지 지속되었다.

## 맺음말

본 글은 신라의 책봉의례가 지니고 있는 대내외적인 의미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책봉 전후에 행해진 사신의 왕래와 그 의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책봉을 전후하여 신라는 당에 고애사와 사은사를, 당은 조제 겸 책명사를 보냈다. 신라에서는 왕위가 교체될 때 전왕의 죽음을 알림과 동시에 책봉을 당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당은 고애사의 보

---

128)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헌덕왕 즉위년(809.8); 『삼국사기』 10, 신라본기 10, 흥덕왕 2년(827.1)

129) 효공왕은 왕 10년(906) 당의 책봉을 받았는데, 왕 2년에는 어머니를 의명왕태후로 삼고, 왕 3년에는 예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 때 왕비가 당의 책명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신덕왕은 원년(912)에 어머니를 정화태후로, 왕비를 의성왕후로 삼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효공왕을 전후한 시기 왕후에 대한 책명 주체는 당 황제가 아닌 신라 국왕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를 받은 후 대체로 그 다음해에 책명사를 보내 신라왕을 책봉하였고, 신라왕은 책봉에 대한 사은사를 당에 보냈다. 이와 같은 책봉을 전후하여 당과 신라는 사신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빈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례를 행하였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오례를 수용하고 운용하였는데, 오례의 내용은 왕권의례로, 의례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책봉 授受를 전후하여 행해진 양국의 빈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책봉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세계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당은 책봉을 통해 책봉의 이념, 즉 천자국과 제후국에 대한 대외 질서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당 황제는 신라왕에게 책문, 관고, 정절, 예물 등을 보냈다. 책봉의 이념은 책문의 본문 내용과 책봉호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책봉호는 관고에도 있었다. 정절 역시 당 황제가 신라왕을 제후왕으로 여기는 표식이었다. 그리고 당 황제는 신라 중대에 왕을 책봉할 때 왕에게만 예물을 내렸다. 그런데 신라 하대에 들어와 왕 뿐만 아니라 왕 이하에게도 예물을 내려 그들에게도 책봉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신라 하대에 왕의 책봉호가 명예직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라 역시 책봉의 주체국이기도 하였다. 문무왕은 안승을 보덕국 왕에 책봉하고, 탐라의 조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신라 역시 蕃國을 둠으로써 책봉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안승이 문무왕에게 보낸 표문의 형식은 문무왕이 당 고종에게 보낸 乞罪表와 비교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신라왕은 당의 책봉을 당연하게 여기고, 책봉을 받은 이후 사은사를 보내지 않기도 하였다. 애장왕은 당의 책봉 전에 왕모와 왕비를 책봉하고, 고애사 겸 책명사를 홀대하기도 하였다. 이로 볼 때 신라는 피책봉국이면서 책봉의 주체국이었으며 중국의 책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당에서 추구한 책봉의 이념과 실체는 달랐다. 따라서 신라 왕은 책봉의례를 대내외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였는데, 애장왕 6년과 9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2세로 즉위한 애장왕은 18세 되는 해인 왕 6년에 친정하면서 당의 책봉을 받았고 왕 9년에는 아버지인 소성왕의 책봉조서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에서 받은 책봉이 왕위계승의 정당성과 왕위계승권자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장왕은 당의 책봉에 앞서 왕비와 왕모를 책봉하고 당의 고애사 겸 책봉사를 홀대하였다. 애장왕은 초기부터 대일본외교를 통해 친당 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났고 애장왕 5년 대열을 통해 군사권을 장악하면서 왕 6년 親政에 앞서 애장왕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애장왕은 왕비와 왕모를 책봉하였고 당의 고애사 겸 책명사를 홀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당의 책명사 홀대는 선덕왕 이래의 왕모와 왕비에 대한 신라왕의 책명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발이었었다고 하였다. 이후 당은 왕을 비롯하여 왕모 등을 책봉하였지만, 애장왕은 일본과의 우호관계 지속과 개혁정치를 통해 당을 견제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애장왕 다음 왕인 헌강왕의 비가 당의 책봉을 받은 이래 효공왕 이전까지 당에서는 신라의 왕모와 왕비를 책봉하였다.

## 참고문헌

### 1.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당개원례』 『구당서』 『신당서』 『책부원귀』 『전당문』

### 2. 논저

-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 金子修一, 2001,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 김선민, 2003, 「당대의 중앙-지방 통신체계와 동어부」 『중국사연구』 25
- 김종복, 2006, 「남북국의 책봉호에 대한 기초적 검토」 『역사와 현실』 61
- 김한규, 2000, 「고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의 구조적 특성」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 박남수, 2007, 「통일신라의 대일교역과 애장왕대 ‘交聘結好’」 『사학연구』 88
- 박남수, 2011, 「8세기 동아시아 외교와 영빈체계」 『신라사학보』 21, 2011
- 박초롱, 2017, 「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 조치와 그 의미 : 중국 二王後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사연구』 86
- 石見清裕,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 양정식, 1999, 「신라 공식령의 왕명문서양식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15, 175-177쪽
- 中村裕一, 2003, 「序說 王言の種類と「制勅」字」 『隋唐王言の研究』, 汲古書院
- 陳戍國, 1988, 『中國禮制史-隋唐五代卷』, 湖南教育出版社
- 채미하, 2001, 「신라하대의 오묘제」 『종교연구』 25
- 채미하, 2006,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사학연구 제127호(2017. 9)

- 채미하, 2007,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채미하, 2010, 「신라의 군례 수용과 왕권」 『한국사연구』 149
- 채미하, 2011, 「신라의 빈례-당 사신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3
- 채미하, 2013, 「한국 고대의 궁중의례」 『사학연구』 112
- 채미하, 2014, 「신라의 가례 수용과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18
- 채미하,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 최병현, 1981,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 최홍조, 2004, 「新羅 哀莊王代の 政治變動과 金彦昇」 『한국고대사연구』  
34
- 최홍조, 2009, 「新羅 哀莊王代の 政治改革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4
- 최희준, 2011, 「신라 중대의 당 사신 영접 절차와 운용」, 『한국사연구』 153
- 胡戟 撰, 1998, 『中華文化通志-禮儀志』, 上海人民出版社
- 황위주, 2007, 「발해 외교문서의 실상과 그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26

## Abstract

### Chaekbong ceremony of Silla and its function

Chai, MiHa

This thesis is studying the political function that Chaekbong ceremony had internally and externally. First of all, it is studies about the coming and going of envoys and its ceremony. Seeing the example of King Hyeogong, Silla sent Goesa and Saunsa to Tang around the time of Chaekbong, while Tang sent Chaekmyungsa concurrent Joje. And seeing the example of Tang's envoy, Hyungsook in king Hyosung period, various ceremonies including Binrye were performed in the course of rendering and receiving Chaekbong between Silla king and Tang emperor. Such ceremonies performed around Chaekbong had political character, and the ceremonies had inseparable relation with Chaekbong.

Chaekbong is an idea about Chinese centered order to world, so Tang emperor sent Chaekmun, Gwango, Jeongjeol, Yemul etc. to Silla specifying that Tang is Chenjaguk(emperor country) and Silla is feudal country(Beonguk). But Silla's kings would take Tang Chaekbong for granted, not sending Saunsa after taking it. And Silla also became a owner of Chaekbong that king Munmu did a Chaekbong to king Bodeokguk, so Pyo sent by Ansung had the same form as Pyo sent from Silla toTang. King Aejang would take Jogong from Tamla. As these showed, Silla's kings also tried to realize the idea of

Chaekbong by placing 변국.

In the meanwhile, On his 6th king year, king Aejang took Chaekbong from Tang, and On his 9th king year, he asked for Chaekbongjoseo of his father, king Soseong. However king Aejang did chaekbong to the queen and king's mother before Chaekbong from Tang and treated Chaekmyeongsa concurrent Goesa poorly. King Aesjang broke out of pro-Tang foreign policy taking good foreign policy with Japan and seiged military power through his 5 years filing. Seen from this, king Aejang focused ruling power to king himself before his own ruling in his 6th king year. Begining his own ruling on this base, king Aejang did chaekbong to queen and king's mother and could treat poorly chaekmyeongsa concurrent Goesa from Tang, and Tang's chaekbong rendered later was only a formal thing to him.

Keywords : Chaekbong, Chaekbong ceremony, Goesa, Chaekmyeongsa, Saunsa, Chaekmun, Gwango, Jogong, king Kyegong, king Hyusung, king Munmu, king Aejang